얼 꿈 땀을 일깨우며 가꾸는
행복한 배움터
학부모 교육 자료

이서초등학교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 자료 목차

1.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 p1

2.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 p5

3.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 기준 ·· p11

4. 교외체험학습 운영 ····· p16

5. 원격수업 운영 ····· p22

6.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p24

7. 상담실 운영 ····· p31

8.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p35

9. 학교폭력 예방교육 ····· p39

10.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 p41

11. 학생 인권 교육 ····· p43

12. 안전사고 예방 교육 ····· p44

13.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 p47

14. 실종 · 유괴 예방 교육 ····· p49

15. 도박 예방 교육 ····· p50

16.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 p52

17. 정보통신 윤리 교육 ····· p54

18. 성폭력 예방 교육 ····· p56

19.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 p61

20. 우리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 p63

21. 청소년 비만·저체중 예방 관리 ···· p66

2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p68

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p69

24. 청탁금지법 이해 ····· p71

25. 학교안전공제회 ····· p73

1.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1 학급 및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학급 수	3	4	3	3	4	2	1	20(1)
학생 수	66	80	66	66	93	63	3	434

2 이서 교육의 기본 방향

3 이서 교육 목표 및 실천 계획

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

1) 학생자치회 중심 생활규정 만들고 실천하기
2) 다양한 자율 동아리 활동 활성화
3) 인성 · 인권교육주간, 다꿈교육주간, 상담주간, 친구 사랑 주간 운영
4) 장애체험 활동, 이웃돕기 활동 전개
5)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나.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어린이

1) 궁금한 것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질문하기
2) 교육과정 재구성과 프로젝트 학습 실천
3) 맞춤형 책임교육, 과정 중심의 성장 평가제 내실화
4) 학습능력 진단검사, 표준화검사, 정서행동 특성 검사
5) 독서토론 동아리 및 아침독서 운동 전개

다. 새롭게 생각하는 어린이

1)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년별 진로 직업 체험교육 및 꿈드림(Dream) 축제 실시
3) 특기 적성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4) 과학한마당 실시
5)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 활성화

라.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

1) 놀이 중심 학교 운영
2) 다양한 스포츠 클럽 운영, 스포츠데이 운영
3) 표현활동 활성화
4) 교과와 연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5)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 실시

4 주요 학사일정

가. 1학기(100일)

월	일	내용
3월	2	입학식 및 시업식
	14	바른언어사용교육
	21	친구사랑교육
	22	인성교육
	23	학교폭력예방교육
	25	표준화 검사(2,5학년)
	28	정보통신교육
	30	교육과정 설명회
	3.28~4.1	학부모 상담주간
4월	4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5	인권교육
	6	민주시민교육
	7	에너지교육
	8	아동학대예방교육
	15	과학한마당
	20	장애인식개선교육
	21	학생건강검사
	22	지구의날 환경교육
	4.25~29	현장체험학습주간
5월	9	다꿈교육
	23	흡연예방교육
	24	재난대응안전교육
	25	소방훈련(6교시)
	27	신체능력검사
	5.30~6.3	통일교육주간
6월	24	교통안전교육
	27	양성평등교육
7월	14	전교어린이회 조직
	27	여름방학식
	7.28~8.18	여름방학

나. 2학기(90일)

월	일	내용
8월	19	개학식
	22	바른 언어 사용 교육
	29	정보통신교육
9월	5	친구사랑교육
	6	인성교육
	7	학교폭력예방교육
	8	장애인식체험횩육
	14	흡연예방교육
	14~15	수학여행
	9.19~23	학부모상담주간
	9.26~30	현장체험학습주간
10월	7	5학년 119 안전체험교육
	11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
	12	우리아이 수업보기
	19	소방훈련(6교시)
	24	인권교육
	25	독도교육, 2학년 119 안전체험교육
11월	11.7~11	꿈드림 축제기간
12월	15	전교어린이회 조직
	28	겨울방학식 및 종업식, 졸업식
	12.29~23.2.28	겨울방학

5 주간 시간 운영 안내

요일 / 학년	월	화	수	목	금	계
1학년	5	4	5	4(5)	4	22(23)
2학년	5	4	5	5	4	23
3학년	5	5	5	6	5	26
4학년	5	5	5	6	5	26
5학년	6	6	5	6	6	29
6학년	6	6	5	6	6	29

※ 학년별 수업시수는 학교행사 운영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학기 말, 학년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조정기를 운영할 수 있다.
※ 1학년은 1학기 목요일 4교시, 2학기 목요일 5교시를 운영한다.

2. 2022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 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2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처리에 따라 **<u>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u>**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학생선수: 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으로 결석 처리.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⑵ 교외체험학습

㈎ 종류: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 기간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가정학습 포함 연 15일 이내** 출석인정으로 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전화 통보를 통한 담임 교사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전화 또는 문자 등) 연락하여야 함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장기 결석

가) 연속 5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장기 결석 사유를 입력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시간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출석인정 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등교 및 하교시각은 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된 학년별 정규교육과정 시각을 따른다.

다. 생리인정결석 및 지각, 조퇴, 결과

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
2) 위 항과 관련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함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초·중등교육법」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나) 출결처리

⑴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⑵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⑴ 성적처리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⑵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2)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가) 학적처리: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나) 출결처리

⑴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⑵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⑵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가) 학적처리:「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처리하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하여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나) 성적처리:「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바.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우리 학교는 190일)의 3분의 2이상(출석127일(결석63일))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외 관리로 처리한다.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서식 1〉 **질병결석 및 기타사유 결석계(학부모)**

결 석 계

	담임	교무	교감	교장
결재				

제 학년 반 번

성명 :

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결석 기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일간)
2. 결석사유(학부모 소견)

3. 담임 소견

4. 첨부(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투약 봉지, 처방전 등)

▶ 1~2일: 결석계(학부모 의견, 담임교사 확인, 투약 봉지, 처방전 등 포함)만 제출

▶ 3일 이상: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

2022년 월 일

학부모 (인)

이 서 초 등 학 교 장 귀 하

3.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 기준

1 코로나19 방역수칙

가.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밀접 접촉 등) 발생 시 등교 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보건용 KF80 이상)**
다.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라.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마.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바. 개인 물통, 소독 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사. **주 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하기(매주 수요일, 일요일)** - 매주 금요일 검사키트 배부

2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 및 후속 조치

가. **매일 아침 8시까지 건강상태자가진단 참여하기**
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자체검사 하기
다.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할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3월 14일 적용 기준임)

<table>
<tr><th>구분</th><th>방역당국 통보</th><th>나의 접종상황</th><th>격리기간</th><th>검사</th><th>등교 기준</th></tr>
<tr><td rowspan="2">"내가"</td><td>확진자인 경우</td><td>접종 무관</td><td>7일 격리</td><td>-</td><td>등교중지</td></tr>
<tr><td>밀접접촉자인 경우</td><td>접종 무관</td><td>10일간 수동 감시
(3일 자택 대기,
자체 격리 권고)</td><td rowspan="2">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td><td>등교 가능</td></tr>
<tr><td rowspan="2">나의
"동거인이"</td><td>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td><td>접종 무관</td><td>10일간 수동 감시
(3일 자택 대기,
자체 격리 권고)</td><td>등교 가능</td></tr>
<tr><td>밀접접촉자인 경우</td><td>접종 무관</td><td>격리기간 없음</td><td>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td><td>등교 가능</td></tr>
</table>

*** 수동 감시 기간 및 격리 해제 후에는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착용합니다.**
*** 접종 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 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 증빙자료 >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 확진(격리)통보서
PCR 검사 받은 학생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확인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학교 자체 조사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다릅니다.

가.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 ②의 경우로 분류됨

나. 접촉자 관리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 제한	증빙서류
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실시 후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별진료소	음성 시 등교 가능	음성 통보 문자
②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내 실시 등	각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 가능 양성 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 기관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가정 검사: 보호자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 앱 설문 등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비 발생)
* **PCR 음성 유효기간** : 음성 확인 문자 수신일 ~ 다음 날까지 (1일 검사, 2일 문자 수신 시, 3일까지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 유효기간** : 검사 당일 ~ 검사일 다음 날까지 (1일 검사 시, 2일까지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 시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증빙서류(택1) :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등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날 24시간 이내 검사 -> 담임 교사에게 음성 결과 문자전송 -> 등교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 교사에게 음성 결과 문자전송 -> 등교
(**3차 검사**) 2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담임 교사에게 음성 결과 문자전송 -> 등교
*** 결과 확진 제출 후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별 등교여부

학생본인

*자가진단키트는 전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합니다.(권고사항)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PCR 동일(3.14~4.13 한시적 운영)

*자가키트검사 없이
코로나검사를
해주는 병원으로
바로 간 경우

코로나
증상이 있나요?

아니오

네

함께 사는 분
가운데 확진된
사람이 있나요?

아니오

네

등교합니다!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합니다.
검사를 했나요?

아니오

네

등교를 하고 싶나요?

아니오

네

출석인정!
*출석인정 증빙자료 :
동거인의 확진문자
또는 서류

등교가능!
*다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6~7일차 등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결과가 양성인가요?

네

등교중지!
확진으로 7일간 격리합니다.
*출석인정 증빙자료 :
학생의 확진문자 또는 서류

자가진단키트 결과가 양성인가요?

아니오

네

등교를 하고 싶나요?

아니오

네

출석인정!
*출석인정 증빙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등교가능!
*다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PCR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가능합니다!
(3월 14일부터 한달간)
결과가 양성인가요?

네

아니오

등교를 하고 싶나요?

아니오

네

출석인정!
*출석인정 증빙자료 :
가정내 건강기록지 또는 PCR음성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

보호자님께!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확진자 접촉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예시) >

- 00월 00일 기준, 본교에 확진자 00명이 발생되어 접촉자(학생)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하여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 보호자께서는 보내드리는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 **(검사결과 음성)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와 공유*하여 주리기 바랍니다.**

* 공유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또는 출력물 지참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실시

※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발급된 '음성확인서'로 대체

◇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221-2988(보건실로 연결)

2022년 00월 00일

이 서 초 등 학 교 장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1차	2차	3차	비고
날짜				*(예시) 3.14.*
결과				*(예시) 음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는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7일간 3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 3회 검사 중 2회(교직원은 1회)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보호자 성명 (서 명)

<서식 3>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학년 ( )반 번호( ) 이름( )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를 (월 일 ~ 월 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국가:**

가정내 건강상태 기록표(매일 기록)

일시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해열제 등 약 복용 여부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중 해당되는 증상을 기록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일시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 )월( )일 시간: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해열제 등 약 복용 여부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중 해당되는 증상을 기록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가정에서 확인한 학생의 현재 건강상태는 위와 같으며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보 호 자 명: (서명 또는 인)

4.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일반 교회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가정학습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산하여 연 30일 이내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4]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5]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6]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7])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문자, 사진 등으로 제출한 뒤 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 가정학습 1일 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4,5]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6,7]

<서식 4>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 가 자	학년	반	번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 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전 화
체험학습 주 제	<예 시>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이서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서식 5>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 청 자	학년	반	번	성 명	전화	비 고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 소	※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 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확인사항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이서초등학교장 귀하

결재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서식 6> : 체험학습 종료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누 가

이서초등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예)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결재	담 임
	전 결

이서초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7> :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가정학습 보고서

누 가

이서초등학교	제 ( )학년 ( )반 ( )번	이름 :

언 제

기 간	2022년 월 일(요일) ~ 2022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어디에서

가정학습 장소	▸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학습 결과 보고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위와 같이 가정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 : (인)

결재	담 임
	전 결

이서초등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5.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1 원격수업 운영

가. 원격수업 운영 개요

1) 원격수업 플랫폼: 전북e학습터 (공공LMS)

2) 원격수업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콘텐츠 활용의 혼합수업

3) 학사 운영 유형

유형		기준(학급 단위)	학사 운영내용
1	**등교수업**	**등교 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정상 등교(전 학생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 단위 일부 등교 + 일부 대체 학습**	**등교 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미만**	일부 **등교 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 대체 학습** 제공
3	**학급 단위 원격수업**	**등교 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수업 실시
4	**학교 단위(전면) 원격수업** (※ 단,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	**학급 단위 원격수업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수업 실시

* 등교 중지 학생: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으로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

4) 원격수업 기본 일정

일정	시간	유형	내용
조회	8:50~9:00	실시간 화상 조회	출석 확인 및 수업안내
수업	학년별 주간학습계획 참고	쌍방향 화상 수업 (매일 1~2시간)	실시간 소통을 통한 피드백
		콘텐츠형 수업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제공
종례	수업 종료 후	실시간 화상 종례	학습 내용 확인

2 원격수업 출결

가.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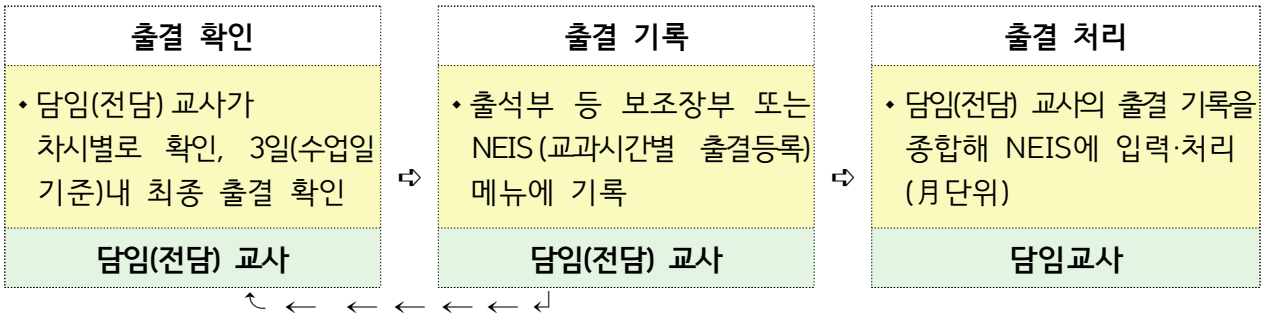

나. 본교 원격수업 참여 학생 출결 처리 방법

1) 당일 확인
   ① 3~6학년: 전북e학습터 로그인하여 <오늘의 학습> 이수(진도율 80% 이상)
   ② 1~2학년: 전북e학습터, 학급 커뮤니티 또는 밴드라이브
2) 사후 확인
   ① 3일 이내 e학습터 로그인하여 <오늘의 학습> 이수(진도율 80% 이상)
   ② 학습 결과물,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등교 후 제출

다. 본교 원격수업 참여 곤란 학생 출결 처리 방법

1) 당일 확인: 담임선생님과 유선 통화, 영상 통화, 문자 메세지
2) 사후 확인: 등교 후 학습 결과물 제출, 학부모 확인서

3 원격수업 평가 및 학생부 기록

★ 2022학년도 초등(특수)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학교교육과-3251(2022.02.25.)]

가. 학생 평가

1)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2)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경우 등교 후 평가 실시 또는 원격수업에서 관찰한 내용 기재
3)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 권장

나. 학생부 기재

1)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 (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2) 원격수업 장기화 등으로 인해 사전에 계획한 학생 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 조정, 평가 횟수 등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판단

6.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가. 목적

1)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특기적성, 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 경감

3)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 완화

4)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학교 실현 기여

나. 방침

1) 학교의 여건과 교육적 필요성,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강좌를 개설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위탁업체 선정, 강사채용 등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4)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세부 추진 운영계획

1) 운영 대상 및 시기

내 용	학 년	시 기	비 고
방과후프로그램	1~6학년	연중	2월 미운영

2) 추진 절차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연간계획 수립 ⇨ 연간운영계획 및 실행계획 심의·자문 (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및 위탁계약 체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전개 ⇨ 평가 및 환류

3) 세부 프로그램 계획

< 무료 강좌 운영 시간표 >

교시	시간	1학년 시간표					2학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5	13:00~13:40		중국어			중국어		독서논술			컴퓨터
6	13:50~14:30	체육	독서논술			컴퓨터	미술	중국어		체육	중국어
7	14:40~15:20	미술									

교시	시간	3학년 시간표					4학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5	13:00~13:40										
6	13:50~14:30					미술	독서논술				체육
7	14:40~15:20		독서논술		체육	컴퓨터		중국어		컴퓨터	중국어
8	15:30~16:10										미술

교시	시간	5학년 시간표					6학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5	13:00~13:40										
6	13:50~14:30			중국어					중국어		
7	14:40~15:20	체육		5,6학년		미술	독서논술		5,6학년		체육
8	15:30~16:10		독서논술			컴퓨터	미술			컴퓨터	

무료 장소	체육 (강당)	컴퓨터 (본관 2층 컴퓨터실)	미술 (별관 2층 미술실)	중국어 (별관1층 돌봄교실3)	독서논술1,2,3,5학년(본관1층 과학실) 4,6학년(별관1층 돌봄교실3)

※ 무료 프로그램은 1인 최대 4개까지 수강 가능함.

< 유료강좌 운영 시간표 >

강좌명	반	운영횟수
영어 (2층 미술실)	A	주2회(화, 목)
	B	주2회(화, 목)
	C	주2회(화, 목)
바이올린 (2층 음악실)	A	주2회(화, 목)
	B	주2회(화, 목)
	C	주2회(화, 목)
한자 (2층 바둑실)	A	주2회(월, 수)
	B	주2회(월, 수)
	C	주2회(월, 수)
바둑 (2층 바둑실)	A	주2회(화, 금)
	B	주2회(화, 금)
	C	주2회(화, 금)
음악줄넘기 (강당)	A	주2회(화, 수)
	B	주2회(화, 수)

강좌명	반	운영횟수
주산 (2층 음악실)	A	주2회(월, 수)
	B	주2회(월, 수)
	C	주2회(월, 수)
코딩 (컴퓨터실)	A	주2회(월, 수)
	B	주2회(월, 수)
	C	주2회(월, 수)
방송댄스 (영어실)	A	주2회(월, 금)
	B	주2회(월, 금)
	C	주2회(월, 금)
로봇과학 (과학실)	A	주2회(수, 목)
	B	주2회(수, 목)
	C	주2회(수, 목)

* 정원의 50% 미만(1개반별 10명 미만) 경우 강사의 의사에 따라 폐강될 수 있음.

운영시간
A반 6교시] 13:50~14:30
B반 7교시] 14:40~15:20
C반 8교시] 15:30~16:10

*** 교실 수급 상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라. 소요예산 : 44,000천원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

마. 기대효과

1)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특기를 신장하는 기회 제공

2)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2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및 만족도 조사

가. 목적

1) 방과후학교 강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활동의 효과 및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나. 방침

1) 연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2) 방과후학교 전 프로그램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안은 수업 실시 2일 전에 결재를 받는다.
3) 본교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참관 희망 교사, 학부모를 참관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별, 요일별로 선택하여 참관하도록 한다.
4) 평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교실에서 공개수업을 실시한다.

다. 세부추진 계획

1) 공개수업 운영 대상 및 시기

대 상	시 기	비 고
방과후프로그램 강좌 전체	연 2회 실시(7월, 11월)	

2) 공개수업 추진 절차

방과후강사와 공개수업 일정 조정 ⇨ 방과후학교 강좌 지도안 취합 ⇨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안내장 발송 ⇨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실시 ⇨ 결과 분석

3) 만족도 조사 추진 방법
   가) 만족도 조사 기간 : 2022. 11월 중(연 1회 실시)
   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다음 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에 참고

라. 기대 효과 및 홍보방안

1) 방과후학교 강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준 높은 강좌 교육 기회 제공
2) 방과후학교 강좌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3) 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에 공개수업 지도안 및 활동 사진 탑재

3 돌봄교실 운영

가. 운영 방향

1) 기간: 2022.03.02.(시업식) ~ 2023.02.28.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돌봄 운영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1학년 신입생은 입학식 날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
2) 소요 예산: 교육청 배정예산 및 간식 수익자 경비
3) 대상
   가) 1~2학년 학생 중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희망 학생 수용하되, 경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수용한다.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법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장애아 등)	맞벌이 가정	일반 가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저학년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 방과후와 돌봄은 이중신청이 불가하다.
4) 운영시간: 오후 돌봄 학기 중 13:00~17:00 방학 중은 신청에 의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5) 운영 규모: 2개반 운영, 돌봄교실 당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6) 프로그램 개설 운영: 오후 돌봄은 다양한 단체 및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강사 등을 활용하여 1개 이상(매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 운영 방법 : 전주대 두드림 위탁 운영
7) 간식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

나. 돌봄교실 내 프로그램 활동

- 개인 및 단체활동의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유 형	내 용
단체활동	ㅇ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외부 강사 등이 지도하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단체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활동 - 자격요건을 갖춘 돌봄 전담 인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독서, 종이접기, 동요, 창의활동, 민속놀이, 체육활동 등) 포함 ㅇ 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 ㅇ 돌봄교실, 강당, 도서실 등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수행
개인활동	ㅇ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개인적·자율적으로 돌봄 전담 인력, 돌봄 보조 인력 등의 지원. 관리 하에 행하는 활동 예) 독서 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놀이 활동(보드게임, 블록 놀이, 장기, 바둑 등), 교과 보충 학습, EBS 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 포함

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1)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교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나) 방송댄스, 체육, 전래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당 돌봄교실별로 놀이 체육 2시간(수, 금), 책 놀이(월, 목) 2시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라)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예정)

과목	학기 중 운영시간	프로 그램 운영 내용
방송댄스	월 14:00 ~ 15:30	단체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더불어 협동심과 단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
체육	화, 수 14:00 ~ 15:30	
전래놀이	금 14:00 ~ 15:30	

※ 돌봄 운영비, 강사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학 중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은 수요조사 및 강사와의 협의 후 계획 수립하여 운영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수업 관리

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기 초 제출

나) 강사는 출·퇴근 시간과 수업 내용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다) 개인 연수와 수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강사 근무 성실성과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점검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 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 후 진행

3)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방학 중 운영

가) 방학 중 수업은 오전에 운영하되,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나) 방학 중 운영 시간, 비용,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은 수요조사 및 협의 후 별도의 방학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다) 방학 전 강사연수를 통한 안전지도 교육 실시

4)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가) 출결관리

- 강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수업시간 10분 전 입실
- 출석부를 활용하여 매시간 출결사항 체크
- 교실 내 기본생활 습관, 언어생활, 교우관계 지도 강화

나) 안전지도

- 학생 안전관리에 대하여 학기별 강사연수 실시

- 학생 지도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미리 학급 담임과 면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생 지도
- 고위험 학생(폭력, 중독, 가출), 위기 학생(부모방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을 파악하여 지도
- 비상 대피로와 소화기 등의 위치 및 사용법을 익히고 긴급상황 대처법 숙지

다)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비상 연락망 구축으로 빠른 대처방안 강구
-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학부모, 담당 교원과의 연락 후 사고보고서 작성
- 학생의 성폭력 및 학생 학대 사실을 인지 또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라) 시설물 이용 및 관리
-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
- 학교의 교육시설 사용 후 정리

라. 급식 및 간식 관리

1) 간식비는 1일 1,500원 내외로 하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전액 무상 지원한다.
2) 간식은 학생 영양 및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완제품을 제공한다.
3) 급식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체 선정을 통한 매식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업체의 관련 보험(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4) 보존식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급·간식 대상 인원에 상관없이 음식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 소독.건조된 기구로 담아 전용 냉동고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동안 보관한다. 보존식 보관기간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보존식은 냉각시켜 급·간식 일자, 식단명, 채취 시간, 채취자, 냉동고 온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6)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와 협조하여 식품 알레르기 현황 등 특이체질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7) 간식은 외부 반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병 예방수칙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간식비는 환불 사유 발생 시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하도록 한다.

<간식비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2/3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간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마. 평가

1) 계획

순	방 법	내 용
1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돌봄 전담 인력, 프로그램 지도 강사별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조사, 협의회 등)
2	돌봄교실 활동 공개	학교 일정에 따라 '방과후 수업 참관 주간'에 함께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수업 참관 기회 제공 및 피드백

2) 방법 및 내용

구분	평가 내용
공개수업	학교 일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수업 참관 및 수업 연수
만족도 조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3) 학부모 홍보

- 가정통신문, 수요조사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작성・발송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취합・통계하여 반영)

7. 2022학년도 상담실 운영

1 운영 방침

가. 상담을 실시하기 전 담임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상담을 진행한다.

나. 상담내용은 내담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내용을 담임 및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다.

다. 사례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담방법 및 자원 활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라.. 세부 운영 방침

1) 운영 기간: 2022.3.~ 2023.2.

2) 대상: 전교생 및 학부모, 교직원

3) 상담 절차: 상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담 일정 조율 후 진행 (※ 사전예약제)

의뢰	절차	유의사항	비고
담임교사	① 상담신청서 작성 또는 구두 신청 (전화 및 메신저) ② 상담 일정 조율 ③ 진행	※ 모든 상담 활동은 학부모 동의 필수 ※ 이용 시간: 08:30~16:30	
학생	① 상담신청서 방문 작성(상담동의서 필수) ② 담임교사와 상담 일정 조율 ③ 진행		
학부모	①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전화: 070-7004-9931		

마. 이서초등학교 상담실 운영

- 학생 이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예방 상담 및 위기 학생 지원
- 학교 실정 및 학생 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재입학생, 부적응학생, 위기 상담 필요 학생,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담
- 학생들의 고민 상담 교사, 학부모 심리 교육 지원
- 교육지원청 상담센터(Wee센터) 또는 지역사회 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2 세부 추진 계획

영역	프로그램명	대상	세부추진내용	추진 일정	담당
개인 상담	개인상담	전교생	■사전예약제(상담신청서 또는 전화접수)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상담실 이용 안내 ■성격, 가족 문제, 또래 관계, 학습, 진로 등 ■수업 중 상담 일정은 담임교사와 조율 후 상담	연중 수시	상담 교사
	학부모상담	학부모	■자녀와 관련된 상담 진행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활용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해결 조력 및 객관적 자료 제공.	연중 수시	상담 교사
	심리검사	전교생 및 학부모	■표준화 심리검사(NEO성격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등), 투사검사(SCT, HTP, 동적 가족화 검사 등), 인터넷중독, 진로 흥미검사 등을 활용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을 통해 내담자 이해 및 심리내적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시각화.	연중 수시	상담 교사
집단 상담 (교우 관계 개선 프로그램)	자아존중감향상	전교생	■욕구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촉진함 ■욕구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4월~	상담 교사 외부 강사
	또래관계증진	전교생	■자기 탐색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 증진을 촉진 ■사회기술 능력 향상	4월~	상담 교사 외부 강사
	또래관계를 활용한 집담상담	해당 학생	■청소년 시기 같은 주제의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을 형성해 운영 ■소그룹 집단상담	4월~	상담 교사
특별 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해당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실시 (총 6회기 이내)	필요시	상담 교사 외부기관
상담 지원	상담 및 의뢰지원	해당 학생	■교육복지 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심군 학생에 대한 심리지원 ■외부기관 심리치료 의뢰지원	연중 수시	상담 교사
기타	상담실 홍보 및 행사 운영	전교생	■상담실 이용 안내 및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 교사와의 대면 기회 마련	1학기 2학기	상담 교사
	또래상담부운영	5,6 학년	■자율 동아리로 운영 ■방과후 시간에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운영 ■'솔리언 또래상담' 기본 교육 이수(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수료증 발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인관계 증진 교육, 상담실 주관 행사 준비 및 도우미 활동 등	4월~	상담 교사
	자문	학부모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자문 조력	연중 수시	상담 교사
		교사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자문 조력 및 협조	연중 수시	상담 교사
	외부기관 의뢰	해당 학생	■위(Wee)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 전문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의뢰	필요시	상담 교사 외부
	기록	전교생	■NEIS 기록 ■상담일지 기록 및 상담실 이용통계 ■10년 보관 후 폐기	연중 수시	상담 교사

<서식 8> 보호자 상담동의서

보호자 상담동의서

이서초 상담실에서는 학생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덧붙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협조 사항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학생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전문상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상담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의뢰한 담임 교사와 학교 관리자 선생님에게 제한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적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경우
   - 상담자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상담 진행 도중, 외부상담전문기관(예>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담자의 권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상담은 1회 ~ 10회 가량 진행되며, 이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기 상담은 총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　　)가
이서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외부 상담전문가와의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소속	학년　　반　　번	성별	□ 남　□ 여
학생 성명	(서명)	휴대폰 번호	
보호자 성명	(서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휴대폰 번호			

2022년　　월　　일

이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본 상담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담만을 위하여 이용되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 상담진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보 호 자 : _____ (서명)

상담 가능한 시간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상담 일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요일 / 상담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8:20 ~ 08:55					
12:00 ~ 13:10					
13:10 ~ 13:50					
14:00 ~ 14:40					
14:50 ~ 15:30					
15:40 ~ 16:20					

8.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교육활동: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 / 학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가. 상해와 폭행

1) 상해

가) 개념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다) 유의점

- 상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폭행

가) 개념

-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다) 유의점

-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협박

1) 개념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3)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 명예훼손 및 모욕

1) 명예훼손

가) 개념

-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 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다)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2) 모욕

가) 개념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년',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다) 유의점

- 모욕죄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관할청에서 고발할 수 없으며 피해교원의 고소를 요한다.

라. 손괴

1) 개념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1) 개념

-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바. 불법정보 유통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가) 개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다) 유의점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 개념

-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사.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1) 개념

-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3 교육활동 사안 처리 방향

(전라북도교육청 2021 개정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 중에서)

■ 사안 처리 방향

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지원 강화

나.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무관용 원칙 적용

가.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관용적인 태도 지양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할청에 의무 보고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9. 학교 폭력 예방 교육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나. 근거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4항)

2) 학교폭력 공시 지침(공시내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계획서)

2 세부 추진 계획

가.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구성권자: 학교장
- 구성원: 5명(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명)
- 학부모 선출 및 위촉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신청)으로 학교장이 위촉함
- 임기: 교원은 근무 기간,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 기간으로 함

3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사안 처리

가.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사실확인 → 정보수집 → 요구사항 확인 → 회복조정 여부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완주교육지원청 사안보고(48시간 이내)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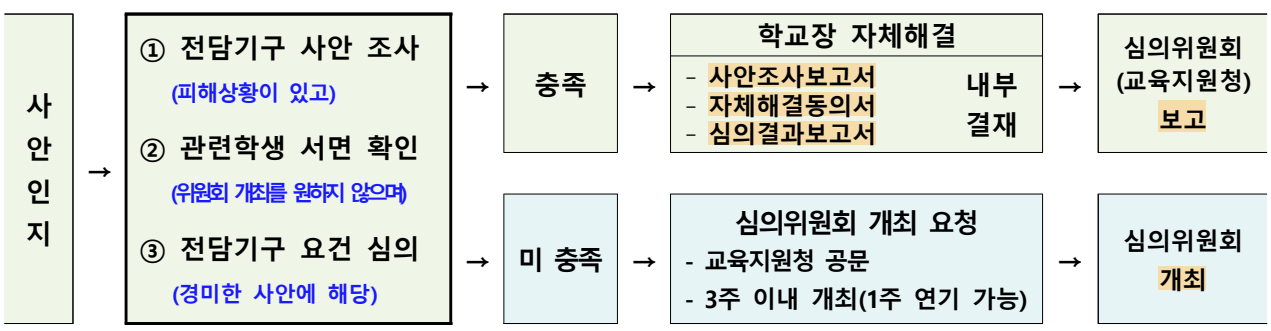

4 학교폭력,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해요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가. 피해 학생 징후

1)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는 경우.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
3)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경우

나.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1)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함
2)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서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하는 경우
3)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이는 경우

다. 가해 학생 징후

1)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내는 행동
2)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한 행동
3)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임

5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가.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 알리기

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자주 이야기해주기

라.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

마.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가능한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바. 학교폭력을 알았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하기

사.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기

아.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 112, 117, 1388, 1588-9128

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차.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10.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요인과 영향

개인적 요인	→	가정 내 요인	→	사회적 요인	→	성폭력
정신적 문제 성격이상, 음주, 스트레스		부부 소통문제, 가부장적 태도, 경제적 요인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태도,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문화, 공권력의 미온적 태도		성매매 학교폭력 청소년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가.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다.

나. 가정폭력은 아내를 향한 폭력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지니며,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다.

3 가정폭력 신고 및 지원

가.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66번 365일 24시간 운영

나.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지원 가능

다.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 지원

라.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번, http://lawhome.or.kr)

마. 쉼터 입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바.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4 가정폭력 피해 학생 지원 계획

가. 가정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 및 지원

1) 가정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2)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3)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 활성화

1) 상담활동 내실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실시
- 연중 지속적 상담실시 및 상담실적은 상담일지 및 NEIS 기록
- 가정폭력 위기학생 파악 및 Wee 센터 홍보 및 연계 상담활동 강화

2)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가)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실시

-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가정폭력 관련 학생, 교원, 학부모 연수 실시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나) 부모와 학생 간 대화 활성화

- 각종 학부모회의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실시(가정통신문 활용)
- 부모와 학생 간 바람직한 대화 방법 적극 안내 및 교육

다) 각종 교육자료 적극 활용

- 담임 교사의 가정폭력 예방 연수 적극 참여 및 여성가족부 교육자료 적극 활용

11. 학생 인권 교육

1 학교와 인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가. 학생자유권: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나.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다. 학생 평등권: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전북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이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여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을 공포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3 상담과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곳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전라북도의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상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4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가.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1) 자녀 일기장이나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2)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3)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나.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다.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XX'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12.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생활 안전 수칙

가. 전기안전 수칙

-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는다.
- 모든 전기제품은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 퓨즈는 규격품 및 정격용량을 사용한다.
- 전열 기구에는 비닐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 고장 및 수리는 개폐기를 내린 후 실시한다.
-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가스 안전 수칙

- 사용 전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문을 살짝 열어 환기한다.
- 점화할 때는 불이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가스가 새는 곳이 있는지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확인한다.
- 가스 기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 시공자에게 맡겨 설치한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밸브를 잠근다.

다. 화재 예방 수칙

-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 제품, 유류 제품 근처에서는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장시간 집을 비 올 때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뺀다.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라. 복도 및 계단 보행 시 안전 수칙

- 계단 및 복도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복도 및 계단 이용 시에는 좌측통행을 하며 조용히 걷는다.
- 단체 이동(운동장 조회 등) 시는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고 밀거나 뛰지 않는다.
- 계단 난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 계단을 무리하게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복도 통행 시 부착물을 건드리지 않는다.
- 복도에서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미끄러지기 쉽고 벗겨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는다.
- 출입구나 통로 모퉁이를 주의한다. 앞으로 미는 출입문은 단번에 열어 다른 사람이 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연다.

마. 시내·외 여행 안전 수칙

- 짧은 나들이라도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
- 여행 목적지 및 동행인을 가족에게 알린다.
- 가장 안전한 교통편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 낯선 장소에서는 항상 침착하게 행동한다.
- 식수 및 음식은 반드시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한다.
-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이나 관공서에 즉시 알린다.

2 교통안전 수칙

-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유 있는 등교 시간이 되도록 한다.
- 결석할 때는 꼭 연락하여(동네 친구) 차가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 등·하교 시 같은 동네 친구나 또래 친구와 짝지어서 다니도록 한다.
- 차량 승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차가 완전히 멈추면(정차) 자리에서 일어나 내린다.
- 차에서 내려서는 차가 떠난 후에 길을 건넌다.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차도에서는 놀지 않는다.
-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도 꼭 차량이 멈추었나 확인하고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우측으로 통행한다.
- 비보호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먼저 가겠다'는 뜻을 밝힌다.

3 자전거 안전 수칙

- 자전거는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만 탄다.
- 양손을 잡고 바른 자세로 탄다.
-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 자전거를 타고 경주하지 않는다.
- 자전거를 타고 있는 친구를 밀지 않는다.
-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탄다.

4 방학(휴가) 중 생활 수칙

가. 가정생활

-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다.
- 방학 중 생활 계획표를 수립하여 하루의 계획된 생활을 철저히 한다.
- 손·발은 항상 청결히 하여 보건 위생에 한층 주의한다.
- TV, 만화책(불건전 만화, 비디오, PC 통신 음란 사이트) 등은 일절 금한다.

나. 교외 생활

- 외출은 반드시 부모님의 사전 승낙을 얻어서 하고 학생다운 복장을 갖춘다.
- 야간외출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으며 특히,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 친구들과 어울려 필요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야외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유흥장(전자오락실, 만화방, 롤러 스케이트장, 노래방 등)의 출입은 일절 금한다.
- 캠핑 및 장기간 장거리 여행은 반드시 부모님과 동행하고 사전에 학교에 알린다.

다. 안전 생활

- 자전거를 타거나 여행할 때 교통 규칙을 지키고 안전에 유의한다.
- 담배나 술 등 해로운 음식물을 취하지 말고 불필요한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산에 오르지 말고 특히, 안전에 유의한다.
- 불온 유인물이나 폭발물은 발견 즉시 인근 경찰서나 학교에 알린다.
- 농작물 도식 행위 및 농약, 벌레 등에도 유의한다.
-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

13.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 자신 나름대로 분명한 동기가 있음
-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추락, 투신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함
-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자살에는 초기 경고 사인을 보이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면 자살 방지 가능함
-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전체 사망 중 자살이 2위 원인임

2 학생 자살 사건의 주요 요인

가. 결손가정(가정 빈곤)

1)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자살 위험성이 존재

2) 대화 부족으로 자녀의 자살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나. 친구 관계에서의 소외

1)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외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을 상실

2)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높아짐

3) 성적 부담

4) 성적의 하락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과 무력감으로 자살 시도

5)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기대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3 자살 예고 징후

-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
-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도전적 발언을 할 때

- 평상시와 다른 반항, 파괴적 행동, 급격한 성격 변화 등
- 부모・가족 구성원・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 등을 보일 때
- 왕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할 때

※ 유명인사의 자살 후 1~2개월간 모방 자살의 증가

4 가정에서 대처법

★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모른다.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 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줌

14. 실종·유괴 예방 교육

★ 실종·유괴 예방 6가지 원칙

가.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나.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다. 실종아동 예방 용품을 활용하세요.

라.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마.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바.·정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합니다.
※ 경찰서나 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습니다.
※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집 주변, 등하굣길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줍니다.
※ 안전드림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자녀와 같이 다닙니다.
※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두지 않습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합니다.
※ 유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깁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둡니다.
※ 친구와 그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합니다

아이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경우 즉시112에 신고합니다

15. 도박 예방 교육

청소년의 모든 도박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사행산업관련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및 언론보도

재학 중 청소년 도박 문제 수준

학년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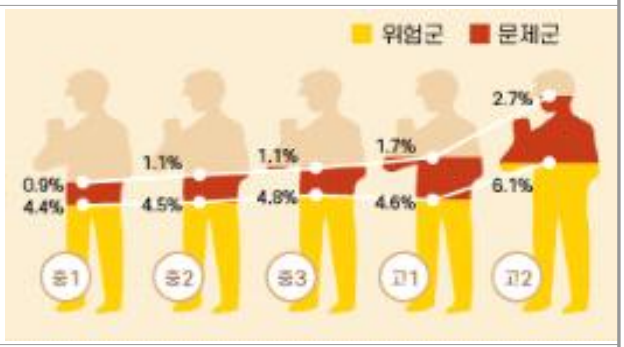

지역별 위험 및 문제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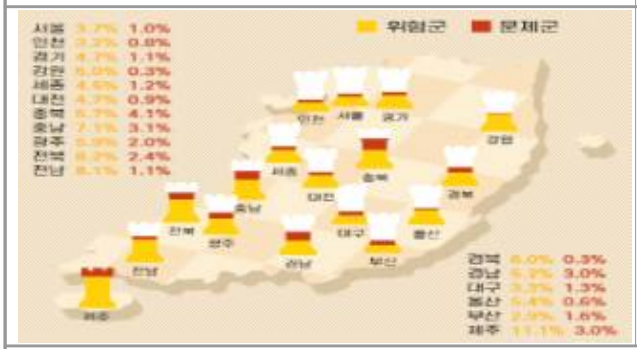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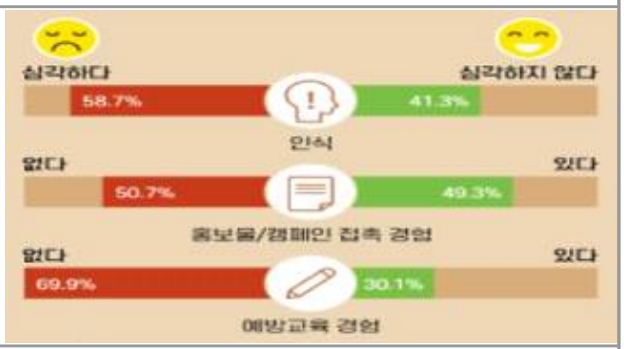

※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 ○ '15년 조사 대비 '18년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 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의 비율은 **1.3%** 상승**(5.1%→6.4%)**
- ○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됨
- ○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충북(4.1%)**로 문제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남(3.1%), 경남과 제주(각3.0%) 비율로 조사됨
- ○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재학 중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함, 그에 반해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30%에 불과함

<최근 언론보도>

- ▸ [한마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 수위 넘었다 [조선일보 19.02.14.]
- ▸ **도박에 물든 청소년,** 2차 범죄 우려 [금강일보 19.01.28.]
- ▸ **'도박에 빠진 아이들...'** 교육 당국 예방 교육은 미진 [뉴스핌 19.01.16.]
-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는 돈, 평균치 10배 넘어 [아시아경제 18.12.25.]
- ▸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입건 청소년 402명** [이데일리 18.10.22.]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 **SNS를 통한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 접근**
  -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확산
  - 청소년들이 이용자 **모집책인 총판**을 담당하기도 함(모집 이용자가 돈을 잃으면 10~30%, 돈을 따면 1~3%의 이익을 취함)
-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 및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하여 쉽게 청소년들에게 노출**
- **사행성 게임 : 불법 스포츠도박(사설 토토), 불법 인터넷 도박(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 등)**
  ※ 게임 속 유료 확률형 아이템 또한 사행성이 높아 주의 요망

■ 도박 문제 발생의 징후

<금전 문제>	<도박 행동>
○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이 자주 발생한다. ○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알 수 없는 명의로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 내역이 발견된다.	○ 집단으로 모여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토쟁이, 총판, 먹튀 등) ○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하다.
<대인 관계>	**<가정 생활>**
○ 대인관계에서 짜증이나 신경질을 자주 낸다. ○ 딴생각이 잦아지고 혼자 있으려 한다. ○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혹은 대화를 피한다.) ○ 가족의 돈을 훔치거나 집안의 귀중품이 없어진다.

■ 자녀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행성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자녀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 ○ 자녀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기보다는 왜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 게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경청합니다.
- ○ 학교에 문제를 알리고, **전문적인 상담(1336)**을 요청합니다.

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전문상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kcgp.or.kr) →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 예방교육 문의: 예방사업팀 담당자(☎02-740-9032)	○ **온라인 상담**: 도박문제 넷라인 (http://netline.kcgp.or.kr) 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이용 ○ **전화상담 및 상담신청:** 국번 없이 **1336**(24시간 364일 상담 가능)

16.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1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

- 스마트폰 중독 유형에는 게임에 접속하여 자기 통제력을 잃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임 중독, 문자 혹은 영상 대화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SNS 중독, 음란물을 보거나 각종 미디어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미디어 중독, 특정한 지식과 정보를 설정하지 않고, 검색 자체에 병적으로 몰두하는 검색중독 등이 있습니다.
- 한 예로 스마트폰에 중독된 다니엘이라는 3세 아이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소변을 참아서 바지에 실례를 하는 등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부모가 스마트폰을 뺏기만 하면 울고불고 악을 쓰며 막무가내로 주먹을 퍼붓고 갖은 욕설을 해 댔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니엘은 검사 결과 시력과 척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두뇌 발달에도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은 무섭게 달라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없습니다. 10~30대는 스마트폰을 평균 3~6분에 한 번씩 만지는데 걸을 때, 화장실 갈 때,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 살배기도 게임 하려고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찾는다고 합니다.
-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강박적 집착은 스마트폰에 늘 마음이 쏠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3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 집중력 저하는 스마트폰에 병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 학원에서 수업 시간이어도 채팅이나 메신저의 메시지가 오거나 푸시 기능(알람)이 뜰 때 반드시 들여다보게 된다.
-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한다.
- 가족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 부모님이 돌아오셔도 스마트폰을 할 때는 인사를 하러 나가지 않는다.
- 숙제나 과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 친구들과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한다.

4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 첫 번째,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앱을 활용합니다.
- 두 번째, 스마트폰 이젠 필요할 때에만 사용합시다.
- 세 번째,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합시다.
- 네 번째, 스마트폰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 다섯 번째,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합시다.
- 여섯 번째,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꺼두세요.
- 일곱 번째,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합시다.
- 여덟 번째, 스트레칭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요.

5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

- 스마트폰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합니다.
-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학습용 외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식으로 사용금지구역이나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고,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취미를 가지면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취미를 찾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관계를 강화합시다.

17. 정보통신 윤리 교육

1 개인정보보호

■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2 인터넷 중독 예방

■ **개념**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 컴퓨터 사용 시간 가족들과 협의 결정
-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 알람시계로 사용 시간 수시 확인
- ▸ 운동이나 취미활동 시간을 늘리기
-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기
-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3 스마트폰 중독 예방

■ **개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4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 **사이버 (언어)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

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나.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다.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라.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마.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사.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8.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적절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성교육은 자녀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1 성폭력은 범죄 행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성적인 내용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갖게 한 경우
-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생식기 등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경우
  (친구끼리 생식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음란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 사례**

- ○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톡, 밴드로 보냄
- ○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
- ○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림
- ○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지도해 주세요.

2 성폭력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동의 없이 발생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길거리나 직장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기 노출은 물론, 어린이 성추행, 음란 전화 등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란 통신이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음란 도서 등의 제작 판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성적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희롱 :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음란물, 음담패설, 음란전화)

성추행 :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인 접촉 (키스, 더듬기 등)

3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 인권 행동 지침 ◀

▶ 성매매에는 없는 것 ◀

4 가족이 함께 배우는 성폭력 예방수칙

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도와주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위급상황을 가장할 때: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보다 다른 어른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른에게 부탁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다. 친절하게 다가올 때: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부탁을 하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부모님의 허락없이는 안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라. 선물을 이용할 때: 이유 없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 아는 사람인 척 할 때: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하고 즉시 자리를 피합니다.

바. 혼자 있을 때: 만약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왔다면 가족 이외에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하며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 친구끼리 장난으로 생식기를 만질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 **그루밍(Grooming)**
  -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행동으로 가해자는 아이를 '길들이는 과정', 양육자를 만나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 줌
  - ○ 아이들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 어렵고,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움

☞ **그루밍을 깨기 위한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5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가. 어린이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에게 "왜 그런 사람을 따라 갔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가해자의 잘못이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나. 어린이를 안심시킨다.

다. 어린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외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라. 즉시 경찰서나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한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한다. 현장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당장은 법적처리를 안하더라도 증거물들은 사건 당시 보존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 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여성 긴급전화(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

바. 어린이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을 삼간다.

사. 아이에게 성교육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묻어두면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성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공정성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구분	주요기능	전화번호
전북해바라기센터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지원	☎ 063) 278-0117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지원, 동행서비스	☎ 063) 246-1375
여성긴급전화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 1366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

음란물은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물들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그린 I-Net** www.greeninet.or.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공부방에 컴퓨터가 있다면 거실로 컴퓨터를 옮기세요.**
-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세요.**

○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 '판별법'**

- 부모 몰래 CD를 감춰 보관한다.
-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잦다.
-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가운데 확장자가 'GIF'나 'JPG' 등으로 끝나는 그래픽 파일이 많다.
- 신용카드 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내용과 금액이 청구된다. - 청구 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web. site' 등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 (음란물업체들은 회사명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
- 방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화면을 바꾸는 등 당황해한다.

○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는?**

음란물은 우연히 접하지만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다그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란물이 왜 나쁜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디지털성범죄 유형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 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 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 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하여 성적으로 이용)**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 · 카카오톡 상담)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19.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1 자녀 양육·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 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가)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나)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다)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해야 한다.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집안 살림은 주로 여자가 하는 일이다.

○ 남자는 슬퍼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안 된다.

○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4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 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뻐."	여성스러움을 강요	**"○○이는 독서 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	행동, 노력에 대한 칭찬
"가족끼린데 속옷 차림이 뭐 어때."	사춘기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지킴**	심리적으로 친밀한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아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20. 우리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

1 아동에게 미치는 흡연의 영향

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 상황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나.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으로 성인 흡연자로서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다.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2 간접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담배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키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담배의 유해 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독성작용이 더 크며 청소년기의 왕성한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중독이 심해서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라.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 발달에도 해롭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마. 청소년은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바.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4 청소년 흡연의 특성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이다.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나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다

청소년에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 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죽상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비흡연 또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많이 발견되며 (음주, 본드 흡입 등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5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가.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금연콜센터**, 금연할 때까지 1년간 전문상담사가 꾸준히 관리

▷ **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

▷ **금연 길라잡이**: http://www.nosmokequide.or.kr, 다양한 금연 정보와 금연 관리를 제공

☞ **2015년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가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나.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됩니다.

마.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바.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5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 담배는 카트리지 속의 정제된 니코틴 용액을 초음파 또는 가열 기술을 사용하여 수증기로 무화(霧化)하기 때문에 기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 없이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므로 전자 담배는 기존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담배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자 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전자 담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 또한 흡연을 지속하면 할수록 니코틴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여 더 많은 니코틴을 요구하게 되므로 흡연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면, **니코틴 중독의 영향으로 신체적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 금연구역 안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 및 교문 50M 이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21. 청소년 비만 · 저체중 예방 관리

1 비만이란?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체중과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만증이란 우리 신체 내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세포> <비만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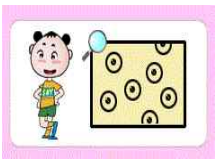

특히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증가된 지방세포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상 어린이보다 75-80%이상 높으며, 여러 가지 성인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치료 및 예방을 해야 합니다.

2 비만의 판정기준

비만을 판정하는 방법은 표준체중에 의한 방법. 체격지수에 의한 방법, 체지방(피하지방의 두께)에 의한 방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비만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체내지방량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몸 안의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표준체중에 본인의 체중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비만도 알아보기★

A) 비만도를 알기 위해서 표준체중을 먼저 구하기 --- ★ 표준체중=(키-100)× 0.9

B) 비만도를 구하기

★ 비만 판정 기준 비만도 = (실제체중 - 표준체중)÷ 표준체중 × 100

C) 비만도를 적용해 보기

★ 비만이란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20%이상 되었음을 말합니다.

경도 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

3 비만 관리방법

가.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기

나.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먹기(야식 먹지 않기)

다. 음식을 천천히 먹고, 20회 이상 씹어 먹기

라. 야채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먹기

마.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기

바. 매일 30~60분 동안 땀이 나도록 운동하기

사. 자신의 정상 체중을 알고 유지하기

아. 책, TV등을 보면서 음식을 먹지 않기

▶ 1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량 및 활동량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천천히 걷기	28분	달리기	1.2㎞	팔굽혀 펴기	12회
빨리 걷기	10분	정지된 자전거타기	6분	수 영	10분
계단 오르기	120계단	턱걸이	6회	탁 구	10분
등 산	24분	윗몸 일으키기	18회	핸드볼	18분
배 구	32분	골 프	19분	세 탁	35분

4 저체중의 원인

가. 활동량에 비해 음식물을 먹는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을 때
나. 먹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할 때
다. 편식이 심할 때
라. 결핵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 등과 같은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때
마.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걱정 등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있을 때

5 저체중의 문제점

가. 식욕부진, 소화장애 등에 의한 빈혈,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나. 신체면역력이 저하되어 결핵, 간염, 감기 등의 감염성질환에 걸리기 쉽다.
다. 여성의 경우 불임, 저능아 출산, 생리불순, 유산의 확률이 높아지기 쉽다.
라.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성이 감소된다.

5 저체중 예방법

가. 반드시 1일 3회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
나. 식사와 식사사이에 적당량의 간식을 먹기
다.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열량이 농축되어 있는 식품을 이용하기
라. 특별히 좋아하는 식품이 있을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됨
마.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끼 먹어야 함
(단백질이 부족하면 위장점막을 비롯하여 신체내의 중요한 성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함)
바. 식용유, 버터, 탄수화물(당분)을 섭취하기
사. 저체중인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많으므로 1일 2회 이상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기
아. 지나친 흡연과 과음,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주의하기

2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나. 스마트폰앱 "우리 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 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다.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서비스 신청

1) 예보 문자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② 고객의 소리→③ 문자서비스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2) 경보 문자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안내문자 발송

1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요령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마.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바.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 결석 인정

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1) 관련서류제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Ⅰ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해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공교육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Ⅱ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입학예정학생 대상 예비수업은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입학예정학생 대상 반편성고사 평가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Ⅲ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초·중·고 등 학교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 (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고사	응시 학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Ⅳ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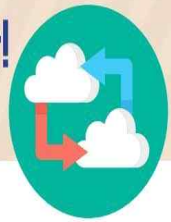

Q.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행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만들 때 2019년 2월 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어요.

Q. 어떤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연장되었나요?

A.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할 수 있어요.

Q.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입니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놀이·활동 중심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Q. 그렇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즐겁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네요.

24. 청탁 금지법 이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 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부정 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은 부정 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형사처벌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Q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O**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Q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Q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O**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X**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X**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Q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X**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Q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5. 학교안전공제회

1 설립 근거 및 목적

가. 설립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나. 설립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 전라북도교육청: https://www.jbe.go.kr **- 행정정보 - 학교안전공제회**

2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40조)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 - 지급기준: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 참조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의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로금 지급(「학교안전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0조의2)

3 요양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도는 사고 부위가 치아인 경우)

라. MRI 판독지(MRI 촬영한 경우)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바. 청구인 통장 사본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4 청구권 소멸시효

「학교안전법」 제65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단, 1회라도 청구하여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됨.)

5 학교폭력 피해지원 내용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6 학교폭력 피해지원 범위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7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 시 구비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다. 진단서
라. MRI 판독지(MRI 촬영한 경우)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청구인 통장 사본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8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내용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9 지원대상 및 기간

가. 대상: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나. 기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
(심리상담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 가능)

10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라. 진단서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청구인 통장 사본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